

# 각 급 연맹체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각 급 연맹체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17. 11. 28. 제3차 이사회

개정 2021. 12. 3. 제5차 이사회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이하 본 협회라 한다.)의 전국 규모 연맹체 (이하 연맹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 용)** 이 규정은 본 협회 연맹 및 연맹의 등록단체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소재지 등)** 연맹의 주 사무소는 국내에 둔다. <개정 2021.12.3.>

## 제2장 조 직

**제4조(조직)** 연맹은 본 협회에 등록된 등록단체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여성부를 회원으로 구성하는 연맹
2. 대학부를 회원으로 구성하는 연맹
3. 리틀부를 회원으로 구성하는 연맹
4. 연식구를 사용하는 남·녀 노소로 구성하는 연맹
5. 일반(군 및 실업)부를 회원으로 구성하는 연맹
6. 초등부를 회원으로 구성하는 연맹
7. 중·고등부를 회원으로 구성하는 연맹
8. 야구종목 활성화와 관련된 회원으로 구성하는 연맹

**제5조(조직의 구분)** 연맹은 본 협회에 가입 할 수 있으며 정회원, 준회원 연맹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 연맹은 정회원 단체로서의 권리 및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을 동의하여 본 협회 대의원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 의결을 거쳐 회원 가입을 확정된 단체를 말한다.
2. 준회원 연맹은 본 협회 이사회의 의결로 준회원 단체로서 가입 승인을 받아 권리와 의무를 제한받는 단체를 말한다.

**6조(정회원연맹의 가입요건)** ① 협회에 정회원연맹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1. 전국을 대표하는 해당 부 유일의 단체일 것
2. 전국을 통할하는 권위와 지도력이 인정되는 단체일 것
3. 12개 이상의 시·도에 팀이 가입되어 있을 것
4. 연맹이 주최하는 대회가 연 1회 이상일 것
5. 해당 부의 보급도와 경기력 발전성이 인정될 것
6. 협회의 정관 및 협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맹의 정관이 제정되어 있을 것
7. 협회의 별도 지원을 받지 않고 독자적인 예산 확보 및 운영할 수 있을 것

②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될지라도 협회가 정회원단체로 가입시킬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여야 한다.

**제7조(준회원연맹의 가입요건)** ① 협회에 준회원연맹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1. 전국을 대표하는 해당 부 유일의 단체일 것
2. 전국을 통할하는 권위와 지도력이 인정되는 단체일 것
3. 9개 이상의 시·도에 팀이 가입되어 있을 것
4. 연맹이 주최하는 대회가 연 1회 이상일 것
5. 해당 부의 보급도와 경기력 발전성이 인정될 것
6. 협회의 정관 및 협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맹의 정관이 제정되어 있을 것
7. 협회의 별도 지원을 받지 않고 독자적인 예산 확보 및 운영할 수 있을 것

②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될지라도 협회가 준회원단체로 가입시킬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여야 한다.

**제8조(등급심의)** ① 협회는 정회원단체, 준회원연맹 가입요건을 매년 심의한다.

② 등급심의에서 정회원, 준회원연맹이 제6조 또는 제7조의 가입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단체가 되며, 제6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는 유보단체로 지정하되, 1년간의 가입요건 충족 유예기간을 두며 유예기간 중 가입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연맹의 자격을 회복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9조에 따른다.

③ 유보단체로 지정된 연맹은 협회의 사업 참여의 제한을 받는다.

④ 협회는 등급심의를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9조(탈퇴요청 및 제명)** ① 연맹이 협회에 탈퇴서를 제출한 경우 협회는 해당 연맹을 탈퇴하게 하여야 한다.

② 연맹이 관리단체로 지정된 날로부터 2년간 관리단체 지정 해제가 되지 못한 경우 협회는 해당 연맹을 제명시킨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맹에 대하여는 제명할 수 있다.

1. 회원의 가입요건을 상실하여 연맹으로서의 존속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곤란한 경우
2. 연맹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협회 정관, 규정, 지시사항을 위배하여 연맹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임원간의 분쟁, 재정악화, 집행부 부재 등의 사유로 연맹으로서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4. 협회의 위상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체육발전을 저해하는 연맹인 경우

④ 연맹이 해산한 경우 협회의 회원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10조(탈퇴신청)** 연맹이 협회에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탈퇴원서
2. 탈퇴이유서
3. 탈퇴를 결의한 대의원총회 회의록

**제11조(권리와 의무)** ① 연맹은 본 협회에 대하여 각 호의 규정한 권리를 갖는다.

1. 협회 총회에 권한의 위임을 받은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 및 의결할 권리
2. 협회에 건의 및 소청할 권리
3. 협회가 주최·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권리
4. 협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주관할 수 있는 권리

② 협회 산하의 연맹 및 연맹의 등록단체는 본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한 의무를 갖는다. <개정 2021.12.3.>

1. 협회의 정관, 제 규정 및 총회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2. 소관 팀에 대해 본 협회의 정관, 제 규정 및 총회 의결사항을 준수하게 할 의무

③ 준회원 연맹은 제1항 제1호의 권리를 제한받으며, 제2항 제3호의 의무를 갖지 아니한다.

④ 전국규모연맹체는 시·도 연맹체를 둘 수 없다.

⑤ 연맹이 의무를 위반하여 본 협회 회원단체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

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 및 지원 사항에 대하여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고 연맹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등 직무 관련 비리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대회개최권)** 본 협회는 연맹에게 전국규모의 선수권대회를 포함한 연맹(등록단체)이 개최하는 모든 경기대회와 동일 급의 국제교환경기를 할 수 있으며 동일 급의 국제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 국가대표 선수 선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제3장 임 원

**제13조(임 원)** 연맹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단 연맹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선임임원 수가 충족되지 못할 경우 별도의 심의를 거쳐 임원인준을 할 수 있다.)

1. 선임임원 :
  - 가. 연맹체의 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1명
  - 나. 부회장 7명 이하
  - 다. 이사 15인 이상 29명 이하(회장, 부회장 포함) 이내
  - 라. 감사 2인
2. 대의원 : 등록단체(학교)별 1인
3. 위촉위원 : 고문 및 참여 약간인

**제14조(임원선출)**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회장선거와 관련된 사항은 협회 회장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개정 2021.12.3.>

- ② 임원선출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임원의 3분의2는 동일 급에 속하는 등록단체 임원 중에서 선출 하여야 한다.
- ③ 대의원이라 하더라도 연맹체의 임원이 되는 경우는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며 해당 단체에서 추천 한 1명이 대의원이 된다.
- ④ 대의원은 동일 급에 속하는 등록단체의 장이 해당 등록단체의 임원중에서 서면으로 추천한다.
- ⑤ 감사는 2인중 1인은 본 협회의 추천을 받아 선출하여야 한다.
- ⑥ 고문 및 참여는 이사회 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 ⑦ 동일인이 각각 다른 종목의 연맹에 선임임원을 겸임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본 협회의 승인을 받아 겸임할 수 있다.

**제15조(임원임기)** 임원의 임기는 4년(감사2년)으로 하되 그 기산은 본 협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임원취임)** ① 연맹의 임원 취임은 본 협회에 보고하고 인준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원사항이나 관련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② 인준 후에 임원의 결격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협회는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③ 협회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임원인준을 회장이 우선 승인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 하여야 한다.

## 제4장 회 의

**제17조(대의원)** ① 연맹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본 협회의 대의원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② 연맹 회장은 제1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3일 전에 본 협회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총회)** ① 대의원총회는 연맹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② 대의원총회는 동일 급에 속하는 등록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추천하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의원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연맹의 해산 및 정관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상임이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주요 사항

**제19조(정기총회와 임시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거나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서면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개최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총회는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대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 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보며 위임장에 의한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⑤ 총회는 통지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 ⑥ 총회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
- ⑦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의결사항을 기재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지명한 대의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20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연맹의 최고 집행기관이다.

- ② 이사회는 선임임원 중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기본재산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7. 기타 주요 사항
- ④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 한때 즉시 소집하여야 한다.
- ⑤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부회장이 의장이 된다.
- ⑥ 이사회는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의결사항을 기재하고 의장과 이사회에서 지명한 이사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21조(정관승인)** ① 연맹은 체육회 가맹경기단체규정을 준용하여 연맹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정관을 제정하여야 한다.

- ② 연맹은 제1항의 가맹경기단체규정에 의거하되 본 협회와 사전협의하여 본 협회의 정관에 부합하는 정관을 제정한 후 개정 시마다 사전협의 및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③ 연맹의 경기종목 대회운영 규정 등 종목 관련 전문규정은 본 협회의 지도·감독

을 받는다.

**제22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규정사항에 대하여는 본 협회 정관 또는 제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장 위원회

**제23조(설치)** ① 전국연맹체는 사업수행과 목적달성을 위하여 이사회 의사결정기구로서 각종위원회를 이사회 의사결로써 설치한다.

② 위원장은 회장이 지명하고, 위원은 당해 분야에 전문가로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③ 각종위원회의 명칭 및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4조(운영)** 전국연맹체는 상벌(스포츠공정위원회) 및 감독, 선수선발을 위한(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여야하며 그 외의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하며 각급 연맹체의 규약은 본 협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하여야 한다.

**제2조(규정해석)** ①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 협회의 정관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② 본 규정은 각급 연맹체 규약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